보도시점 (전매체) 국무회의 종료시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 지원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불연·준불연 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하였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배소혜	(044-204-7899)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목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한지연	(032-450-11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⑤ (생 략)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5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신고·심사·동의·지정·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 인·허가등의 ----------------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인·허가등의 ------------------------------. ----- 인·허가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